

[미성년자용]

위 입 장

수임인 : 법무법인 한 누리 (www.hnrlaw.co.kr)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서초동, G-Five센트럴프라자)
 (Tel : 02-537-9500, Fax : 02-564-9889, hnr@hnrlaw.co.kr)

※ 위임인 인적사항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 받으실)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 승소금 수령시 지급받으실 계좌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가입자본인계좌
-----	--	----------	--	-----	---------

상기 위임인은 이른바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상기 수임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사건위임계약서 2조(위임사무의 범위), 제3조(수권범위)와 같은 권한을 수여합니다.

2018.

위임인 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성명 :	<input type="checkbox"/> 인	생년 월일		휴대폰 번호	
모	성명 :	<input type="checkbox"/> 인	생년 월일		휴대폰 번호	

[첨부서류]

- * 각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가족관계등록부 원본
- * 아이폰 캡처화면 또는 통신사별 가입증명 (택 1)

[미성년자용]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문답서

해당사항에 표 해주세요

<p>■ 가입하신 휴대폰 번호는?</p>	<p>010 - -</p>
<p>■ 2017년 1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21일 사이에 보유한 소송 대상기종의 수량은?</p>	<p><input type="checkbox"/> 1대 / <input type="checkbox"/> 2 대이상</p>
<p>■ 아이폰을 사용한 통신사를 선택 해주세요.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선택해 주세요)</p>	<p><input type="checkbox"/> SKT / <input type="checkbox"/> KT / <input type="checkbox"/> LG유플러스 <input type="checkbox"/> 기타()</p>
<p>■ 귀하가 구입한 아이폰의 기종을 선택해주세요.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선택해 주세요)</p>	<p><input type="checkbox"/> 아이폰5 / <input type="checkbox"/> 아이폰5C / <input type="checkbox"/> 아이폰5S <input type="checkbox"/> 아이폰6 / <input type="checkbox"/> 아이폰6플러스 <input type="checkbox"/> 아이폰6S / <input type="checkbox"/> 아이폰6S플러스 / <input type="checkbox"/> 아이폰SE <input type="checkbox"/> 아이폰7 / <input type="checkbox"/> 아이폰7플러스</p>
<p>■ 2017년 1월 말 ios 업그레이드 이후 불편해진 점은? (모두 선택 해주세요)</p>	<p><input type="checkbox"/> 속도가 낮아짐(로딩 중 표시는 나오지만 멈춰있음, 카메라 속도 저하 등) <input type="checkbox"/> 렉걸림 현상 <input type="checkbox"/> 추운 날씨에 꺼짐 현상 발생 <input type="checkbox"/> 앱 간 충돌(동영상 시청하면서 튕겨져 나옴, 앱을 열면 작동되지 않고 강제 종료 등) <input type="checkbox"/> 배터리 급속 방전 <input type="checkbox"/> 와이파이 연결 불안정 <input type="checkbox"/> 터치 인식 오류 <input type="checkbox"/> 화면 밝기가 자동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함. <input type="checkbox"/>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면 홈화면이 보이지 않아 강제 종료 <input type="checkbox"/> 발열현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p>
<p>■ 다음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체크해주세요. (모두 선택해주세요)</p>	<p><input type="checkbox"/> 중고폰구입 <input type="checkbox"/> 수리및교환폰(리퍼폰) <input type="checkbox"/> 해외구매폰(직구 및 공구) <input type="checkbox"/> 휴대폰교체 : 아이폰→아이폰 <input type="checkbox"/> 휴대폰교체 : 아이폰→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없음</p>

사 건 위 임 계 약 서

의뢰인(‘갑’) :
수임인(‘을’) : **법무법인 한누리**

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갑’ 은 아래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 라 한다)를 ‘을’ 에게 위임하고 ‘을’ 은 이를 수임한다.

사 건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		
당 사 자	‘갑’ 및 동종피해자들	상 대 방	미합중국 법인 Apple Inc. 및 / 또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제2조 (위임사무의 범위)

‘갑’ 이 ‘을’ 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범위는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소송이 유사 선례가 없는 집단적 소송임을 감안하여 제소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제소 상대방, 청구의 내용과 금액, 상소 여부, 화해, 조정안의 수락 및 소 취하 여부 등은 갑 및 갑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을의 전략적 판단에 따르기로 하고 갑은 이에 동의한다. 1심에서 전부 또는 일부승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상소에 따라 2심 또는 3심으로 진행될 경우 2심 또는 3심의 수행은 이 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1심에서 원고 전부패소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항소심의 위임은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른다.

1. 일체의 소송행위 (국내 및 국외에서의 조정신청, 소제기 등 일체의 소송행위 포함) 및 상소의 제기, 보전처분의 제기, 반소의 제기 및 응소,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복대리인의 선임,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강제집행 등 일체의 재판상 행위
2. 일체의 재판외 행위 (국내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내용증명 발송, 소송외 합의 등)
3. 상기 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필요한 행위 (법원 제출용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목도장을 새겨 위임장에 날인하는 행위도 포함)

제3조(수권범위)

‘갑’ 은 본 위임계약체결과 동시에 위 제2조의 위임사무의 동일한 범위의 수권범위를 가진 위임장을 ‘을’ 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을’ 은 위 제2조의 수권범위내의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갑’ 의 인장을 조각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법원 등 해당기관에 제출한다.

제4조(수임인의 지위)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갑’이 소송위임단계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 또는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을’은 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갑’을 소송의 원고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거나 소 취하를 하여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수행에 따른 착수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성공보수)

화해, 조정, 판결 등 어떠한 사유로든 애플 Inc 또는 애플코리아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받아내는 경우를 성공으로 보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비율로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1. 본안소송의 1심 제기 후 판결, 화해 등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실제 지급금액의 16.5%(15% 및 이에 대한 부가세 1.5%)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2. 본안소송의 2심으로 진행된 이후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비율을 22%(20% 및 이에 대한 부가세 2%)로 상향조정한다.
3. 본안소송의 3심으로 진행된 이후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비율을 27.5%(25% 및 이에 대한 부가세 2.5%)로 상향조정한다.
4. 위 1, 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결정 등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이 결정 또는 조정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조정된 비율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제8조(성공보수의 지급방식)

1. ‘갑’이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 때에는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7조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을 ‘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이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그 지급받은 금원 중 제9조에 따라 ‘을’이 선부담한 비용 및 제7조의 성공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갑’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비용부담)

위임사무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 소송실비는 우선 ‘을’ (법무법인 한누리)이 선부담하되,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기로 한다. 패소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제10조(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이 종료한 때로부

